

제346회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부록)
(정기회)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6년11월4일(금)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서면질의서】

○금태섭 위원	2
○김성식 위원	8
○인재근 위원	11
○진선미 위원	16

【서면답변서】

○국무조정실	18
○기획재정부	23
○보건복지부	42

*** 서면질의서**

금태섭 위원

(총 5 면)

1. 고용보험 산전·후 휴가급여 건강보험재정 이관은 신중히 검토하고 보장성 강화해야

1) 고용보험 산전후 휴가급여의 성격(여성의 고용활성화)

-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형편상 산전후휴가급여의 부담을
 - 일반회계 전입금 확대(700억원→2,600억원) 또는 건강보험에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고용보험 ‘산전후휴가급여’는 고용보험법 제75조에 따라
 -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는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Q1. 장관님... 다른 나라들은 산전후휴가급여 대상 및 재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복지부 장관)

2) 산전후 휴가급여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목적과 성격에 맞지 않음

Q2. 장관님, 건강보험에서 임신·출산 관련 연간 지원하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 (복지부 장관)

Q2-1. 저출산기본계획을 보면.... 저출산 극복을 위한 보장성 확대를 위해 추가적인 지원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 않습니까?

☞ (복지부 장관)

- 네... 현재 건강보험에서 임신·출산과 관련하여 상당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무엇보다... ‘건강보험 제도’는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 및 출산·사망 발생에 따른 급여, 즉 의료서비스에 한정됩니다.
 - 따라서, ‘건강보험’에서 산전후 휴가급여에 대해 지원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건보 지속 가능성 위협

Q3. 기재부 차관님, 기재부에서 '15년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 건강보험재정 고갈

이 몇 년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 (기재부 차관)

-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63.2% 수준입니다.
 - 현재, 정부는 의료비 부담 항목을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추가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 특히,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보험의 본래의 목적과 다른 항목에 대한 지출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4) 건보재정은 저출산·고령화 대책차원에서 보장성 강화에 적극 활용 필요

- 임신·출산에 드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은 당연히 건강보험이 담당해야 할 몫이지만,
 - 직장 여성들이 출산·육아에 부담을 느끼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고용보험과 국가, 즉 일반회계에서 감당해야 합니다.

Q3. 기재부 차관님, 고용보험 재원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노사정 합의에 근거하여 부처 논의를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여성 고용활성화 차원에서 예산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재부 차관)

2. 저출산 극복, 발상의 전환이 필요

1) 낮은 출산율에 맞춰 연금제도나 정부의 지출구조 조정을 고려해 볼 것

- 지금까지,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우리 정부에서 손을 놓고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하지만 정부가 내놓는 정책에 대해...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비효율적이다, 실효성 없는 정책이다'라는 비판이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Q1. 국무조정실장님, 정부가 3차 저출산 계획 보완대책에 이르기까지 10여년에 걸쳐서 저출산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 그 때마다 정부의 저출산 위기 극복 대책이 많은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로부터 비판받았습니다.
-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저출산 현상의 핵심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국무조정실장)

○ 현재 정부의 저출산 대책의 가장 큰 문제는

- '저출산 해결' 자체... 즉,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입니다.

○ 저출산 고령화의 핵심 문제 중 하나는 '정부재정의 적자'입니다.

- 아시다시피 저출산으로 생산인구가 줄고 그에 따라 보험료나 세금을 낼 사람은 줄어들게 됩니다.
- 반면, 부양해야 할 노인들은 늘어나고 결국 정부재정, 즉 연금 및 의료보험 재정이 부족해질 것입니다.

Q3. 그런데 정부재정 적자가 출산율을 높인다고 해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국무조정실장)

○ 단기적으로 정부 재정에 도움이 된다는데 동의합니다.

- 그런데 좀 더 장기적인 접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지금 우리가 고령화 시대라고 해서 노인층의 증가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

는데... 0-14세 층의 비중이 큰 것도 사회적 부담이 됩니다.

- 물론, 이들은 이후에 생산인구로 자라겠지만, 더 시간이 지나 결국 노인이 된다고 생각해보면 다시 부양해야 할 층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입니다.

- 적정한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면야 별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인구변화’는 사실상 장기적인 이슈입니다.
- 저는 지금처럼 정부가 단기적으로 돈을 쏟아 붓는 식의 대책보다는... 사회 환경 변화에 맞게 출산율을 자연스럽게 높이는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그런 의미에서 우리 현실에 맞는 맞춤 정책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연금제도나 정부의 지출구조를 저출산 환경과 규모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해보셨으면 합니다.

2) 여성의 고용률을 높이고 사회적 지위를 신장시킬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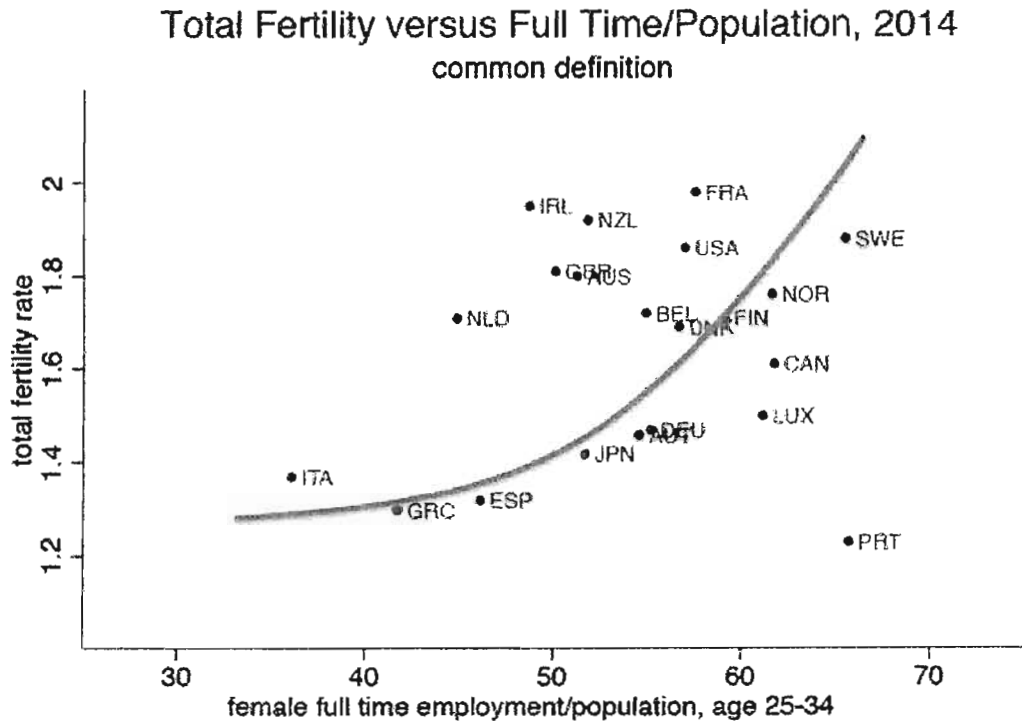
- 여전히 육아와 가사노동은 여성의 몫이고 여성들이 지금처럼 출산에 큰 부담을 느낀다면 출산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 남편의 가사노동 부담이 육아 활동이 자연스러운 사회로 바뀌고 적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Q2. 실장님... 남성의 육아 활동 참여와 가사노동 분담에 대한 인식이 과거에 비해서는 분명 양성평등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는 합니다.

- 그러나 정부가 저출산 계획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것처럼 남성 육아 휴직 수당 확대가 과연 지금 우리의 기업 문화, 사회구조에 맞는 최선의 대책입니까?

☞ (국무조정실장)

- 우리 사회구조가 이렇게 변화된 상황에 점차 적응해야 합니다.
- 북유럽과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여성의 사회참여 비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출산율도 높아지는 관계가 드러났습니다.
- OECD에서 발표한 ‘2014년 OECD 국가의 25-34세 여성 풀타임 고용률과 출산율의 관계’를 보면 스웨덴, 노르웨이와 같이 여성의 풀타임 고용률이 높을수록 출산율도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OECD 국가의 25-34세 여성 풀타임 고용률과 출산율의 관계, OECD, 2014]

Q3. 이와 같이...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생산 참여 확대가 출산율 문제 극복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데 동의하십니까?

☞ (국무조정실장)

○ 사실 생산인구 15-64세 중 절반은 여성입니다.

- 우리나라 여성들이 결혼과 육아로 경력단절을 경험하는 이 사태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 출산율 높이는 정책으로 출산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 여성의 생산 활동을 보장해야 합니다.
- 이에 더하여, 여성 근로자가 경제활동과 가사·육아를 동시에 감당할 수 있는 사회 구조가 정착될 때 정책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출산율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서면질의서

김성식 위원

(총 2 면)

기획재정부 서면질의 - 김성식 의원

1. 아동수당 도입 논의와 관련해 기획재정부가 재원부담을 이유로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저출산 극복이라는 국가적 명제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 기재부의 의견은?
2. 양육지원체계를 수요자 중심의 현금지원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의 효과에 대한 기재부의 의견은?(출산율 측면, 제도운영 측면, 국민체감 측면)
3. 누구나 아이를 돌보면서도 당당히 일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출산전후 휴가기간을 현행 90일에서 ILO 권고기준인 120일로 확대할 필요, 기재부의 의견은?
4. 남성의 육아참여 제고를 위해 남성 출산휴가도 유급 30일(6개월간 매월 5일 이상)로 확대할 필요, 기재부의 의견은?
5.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을 의무화하고, 대체인력을 사용하는 민간기업의 추가비용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 필요, 기재부의 의견은?
6. 모성보호급여의 국가책임을 확대해 재원안정성을 확보하도록 일반회계에서 모성보호급여의 재원을 50% 이상 분담하는 방안 필요, 기재부의 의견은?
7. 3차 기본계획 및 저출산 보완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기재부 차원의 추진상황 및 추가적으로 필요한 대책은?

보건복지부 서면질의 - 김성식 의원

1. 아동수당 도입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의견 및 재원확보 방안 마련을 위해 기재부와 협의한 사항은?
2. 양육지원체계를 수요자 중심의 현금지원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의 효과에 대한 복지부의 의견은?(출산율 측면, 제도운영 측면, 국민체감 측면)
3. 아동수당을 부모의 양육에 대한 보조 개념(부모에 지급)이 아닌, 아동 자체에 대한 공적 보장(아동에 지급)으로 인식을 전환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 및 연대의식을 고양시켜 가족해체 예방 및 아동의 건전한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 복지부의 의견은?
4. 누구나 아이를 돌보면서도 당당히 일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출산전후 휴가기간을 현행 90일에서 ILO 권고기준인 120일로 확대할 필요, 복지부의 의견은?
5. 남성의 육아참여 제고를 위해 남성 출산휴가도 유급 30일(6개월간 매월 5일 이상)로 확대할 필요, 복지부의 의견은?
6.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을 의무화하고, 대체인력을 사용하는 민간기업의 추가비용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 필요, 복지부의 의견은?
7. 모성보호급여의 국가책임을 확대해 재원안정성을 확보하도록 일반회계에서 모성보호급여의 재원을 50% 이상 분담하는 방안 필요, 복지부의 의견은?
8. 3차 기본계획 및 저출산 보완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복지부 차원의 추진상황 및 추가적으로 필요한 대책은?
9. 저출산 극복을 위해 해외에서 시행 중인 제도 중 우리나라가 시행하지 않고 있는 제도의 현황을 제출바람

* 서면질의서

인재근 위원

(총 4 면)

< 청년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 필요 >

-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임금근로자 중 29세 이하 청년 비정규직 비율이 2010년 33.6%에서 2015년 35%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다른 연령층의 비정규직 비율이 감소세에 있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또한 청년층의 월 급여액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으며 사회보험의 가입률 또한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었습니다.

① 일각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현재의 고용중심적 청년 정책의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사례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한 복지부 입장을 답변 바랍니다.

- 현재 청년층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은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한 ‘고용촉진 지원 사업’과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들은 청년의 소득 자체를 보장하기 보단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 보조금 혜택을 주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단기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능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② 따라서 일부에서는 청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고용이나 임금과 연동되지 않는 보편적 소득보장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복지부 입장을 답변 바랍니다.

③ 기본소득 방식의 청년 지원정책이 더 많이 논의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복지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관련 사안을 연구하고,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복지부 입장을 답변 바랍니다.

〈복지 사각지대 빈곤아동 문제〉

- 2011년도(전체 아동 990만 명) 기준으로 단지 부양해줄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혜택을 못 받는 사각지대 빈곤가구 아동이 최소 39만 명에서 최대 68만 명으로 추정 되었습니다. 이들 사각지대 빈곤 아동의 생활은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아동과 별반 다르지 않거나 오히려 더 열악하다고 합니다.
- ① 따라서 빈곤 아동들이 기초보장 수급자에서 배제되는 가장 큰 이유인 불합리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하루 빨리 개선해야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복지부 입장을 답변 바랍니다.
- 부양의무자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교육급여가 있지만 미취학 아동을 비롯한 학교에 다니지 않는 빈곤아동들은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 ② 이 때문에 사각지대 빈곤아동 전체를 보호하기 위해선 교육에 국한되지 않은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지만 노인빈곤 해결을 위해 기초연금을 시행하고 있듯이, 빈곤가구의 아동에게 아동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에 대한 복지부 입장을 답변 바랍니다.

< 가정양육수당 관련 >

- 보건복지부는 2017년 가정양육수당 지원단가를 2016년과 동일하게 만 0세는 월 20만 원, 만 1세는 월 15만 원, 만 2세는 월 1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가정양육수당 단가를 어린이집 보육료와 비교해보면, 인건비지원 어린이집 보육료에 비해 약 39.38%에 그칩니다. 게다가 인건비지원 어린이집 보육료와 비교해보면 약 24.48%에 그칠 정도로 큰 차이를 보입니다.
 -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런 차이 때문에 학부모들이 가정양육이 가능함에도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가 발생해 불필요한 정부예산이 지출되는 부작용이 생겼다고 분석했습니다. 복지부도 문제점을 알고 2017년에 셋째 자녀부터 가정양육수당을 10만 원 더 인상하고자 했지만, 정부안 심사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 ① 가정양육수당이 어린이집 보육료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되면서 가정양육과 보육시설 이용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부모들이 어린이집 이용과 비교했을 때 손해라고 생각해, 가정양육을 선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도개선의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기재부 입장을 답변 바랍니다.
- ② 또한 복지부의 가정양육수당 인상안이 반영되지 않은 이유와, 향후 반영 여부에 대한 기재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예산 >

- 기재부는 매년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예산을 책정하지 않고 국회로 제출하고 그때마다 국회는 증액을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보건복지위원회 300억 증액)

① 기재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2]를 근거로 지방이양사업이라는 이유로 매년 경로당 예산을 편성하고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예산 범위 내에서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거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을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사태가 반복되어선 안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기재부 입장을 답변 바랍니다.

② 또한 기재부의 예산 미편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노인지원 정책에 대한 정부 의지가 부족하다는 반증이자 고령화시대를 역행하는 처사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기재부 입장을 답변바랍니다.

* 서면질의서

진선미 | 우원

(총 1 면)

161104 저출산특위 질의 (KIM)

행복주택 예산 등 17년 저출산 대책 예산에 대한 집행 계획 명확해야

진선미 의원

- 17년도 예산안에 대해 정부가 제시한 대표적인 저출산 극복 사업은 행복주택 공급 확대임.
 - 정부는 신혼부부·청년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17년도에 맞춤형 행복주택 4만8천호를 공급할 예정이고, 관련 예산은 2조5000억 원임. 이는 16년도에 비해 1만호 확대된 것이며, 예산은 1조2000억 원 증액된 것임.
- 정부는 이 중 3000호 가량을 기존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세부적인 계획 수립이 없는 상황임.
 - 매입국민임대주택 사업은 2011년부터 추진되었지만, 매입 행복주택 사업은 2017년 신규로 시작되는 사업임.¹⁾ 국토교통부는 현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2017년까지 매입 가능한 물량을 제안 받아 매입가능성 등 사전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3000호의 행복주택을 매입을 통해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임.
 - 그러나 매입행복주택의 경우 민원발생이 가능하고, 관계기관 사전 협의 등이 필요하여 계획 완수가 어려울 수 있음. 매입국민임대주택 사업의 경우,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재건축·재개발 진행상황, 지구별 매입가능 호수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계획 대비 매입실적이 18.1%(계획 7000호, 실적 1,390호)에 불과함.
 - 따라서 2017년부터 신규로 시작하는 매입행복주택은 매입국민임대주택과 같은 실적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저출산 대책을 명목상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매입행복주택 사업처럼 제대로 된 계획 없이 집행되는 사업이 많음.
 -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2017년도 예산안 중 저출산 대책 사업들에 대해 상세 집행 계획을 점검하여 보고할 것.

1)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료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인 반면, 행복주택은 대학생/사회초년생/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중위 소득층까지를 포함하며 최대 6년간 임대가 가능하다.

*** 서면답변서**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금태섭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금태섭 위원(더불어민주당)

1. 정부가 지난 10여년에 걸쳐 저출산 대책을 내놓았는데 그 때마다 많은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로부터 비판을 받은 이유는 무엇이고, 저출산 현상의 핵심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저출산 문제는 젊은 세대들의 결혼과 출산을 어렵게 하는 일자리·주거·교육 등 사회구조적 문제와 함께 가치관의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생각함
- 그동안 추진한 제1·2차 저출산 기본계획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대안 제시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음
-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고용·주거·교육 등 구조적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둔 제3차 저출산 기본계획(16~20)을 마련하여 본격 추진중에 있음
- 앞으로도 제3차 기본계획을 지속 점검·보완하여 저출산 문제가 극복될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음

금태섭 위원(더불어민주당)

2. 정부재정 적자가 출산율을 높인다고 반드시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함. 지출구조를 저출산 환경과 규모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 ☐ 장기적으로 국가재정 여건은 경제성장, 재정운영방식, 인구구조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고려하여야 함
- ☐ 저출산·고령화가 장기화 될 경우 잠재성장을 둔화, 연금·의료 등 복지 지출 증가로 장기 재정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 정부는 미래 재정위험에 대비하여 재정 지출 여력을 확보하고, 재정건전성 악화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임

금태섭 위원(더불어민주당)

3. 남성의 육아활동 참여와 가사노동 분담에 대한 인식이 과거에 비해 분명 양성평등의 방향으로 나아가가고 있다는 것을 느낌. 그러나 저출산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남성육아휴직수당 확대가 과연 지금 우리의 기업 문화, 사회구조에 맞는 최선의 대책인지?

- ☐ 출산을 주저하는 육아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부모 모두가 함께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매우 중요함
- 부모의 순차적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는 “아빠의 달” 수당 인상은 이러한 필요성에서 저출산 보완대책(8.25)에 포함된 것임
- ☐ 이와 함께 정부는 출산·육아 부담 완화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등 근무제도 유연성 확대 및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도 적극 추진하고 있음

금태섭 위원(더불어민주당)

4.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생산 참여 확대가 출산율 문제 극복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데 동의하는지?

☐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함

☐ 정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육아휴직 후 직장복귀 지원프로그램,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등

○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생산 참여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음

* 서면답변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금태섭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재정건전성관리과장 장정진 044-215-5740)

기재부가 '15년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 건강보험 재정 고갈이 몇 년도인지 알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 2015.12월 발표된 「2060년 장기재정전망」 결과에 따르면

-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 증가 등에 따라 2025년에 고갈 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용환경예산과장 이상원 044-215-7230)

여성고용활성화 차원의 예산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모성보호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의 일반회계 전출금 확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 최근 출산전후휴가급여 예산규모*가 정체 상태이지만 일반회계 전출금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12년 대비 4.7배 증가)

* 출산전후휴가급여(억원): ('12)2,419→('13)2,351→('14)2,368→('15)2,590→('16)2,470
일반회계 전출(억원): ('12)150→('13)250→('14)350→('15)700→('16)700

- ☐ 다만, 모성보호급여의 지출 증가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인상 등 다양한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습니다.

*** 서면답변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김성식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김성식 의원(국민의당)

(복지예산과장 최한경 044-215-7510)

아동수당 도입과 관련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적극적
재원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 기재부의
의견은?

- ☐ 현행 아동에 대한 지원은 소득·취업여부와 상관없이 수혜자의
수요에 맞춘 전면 무상보육 중심으로 지원중이며,
- 보편적 아동수당제도 도입시 기존 제도와 중복되어 보육
제도의 전면개편과 함께 신중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성식 의원(국민의당)

(미래사회전략팀장 송진혁 044-215-4930)

양육지원체계를 수요자 중심의 현금지원체계로 지원하는 방안의 효과에 대한 기재부의 의견은?

- 현재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는 영유아를 위한 보육료 지원,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를 위한 가정양육수당을 시행중입니다.
- 보육료는 정부지원금을 해당 보육·교육시설 이용에만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 방식, 가정양육수당은 현금지원 방식입니다.
- 양육지원체계를 현금지원체계로 전환하는 경우 제도운영이 단순해지는 측면이 있으나, 양육목적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 한편, 현금지급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이 불분명*하다는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프랑스) 아동수당과 출산율간 직접적인 관계는 미비하나, 가족정책의 확대로 출산율이 상승했다는 연구가 있음(Laroque and Salanie, '03)

김성식 의원(국민의당)

(고용환경예산과장 이상원 044-215-7230)

일가정 양립의 사회적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출산
전후 휴가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 출산전후 유급휴가제도 도입 이후 휴가기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 ('53년) 유급휴가 60일 → ('01년) 휴가 90일(유급 60일) → ('05년) 우선
지원대상기업 90일분의 통상임금 지원 → ('14) 다태아 출산휴가 확대(120일)

** 출산휴가기간(90일) 중 무급 30일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135만원
한도로 지원(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 전부 지원)

○ 휴가기간 확대를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하며,

- 출산휴가 사용이 어려운 기업문화, 대체인력 확보 등
기업 부담 확대 등을 고려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다만, 여성근로자의 건강 강화 및 저출산 극복 등을 위해
출산휴가 활성화 방안을 관계부처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성식 의원(국민의당)

(미래사회전략팀장 송진혁 044-215-4930)

남성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최대 5일(유급 3일)에서 유급 30일로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의원님께서 언급하신대로 남성 출산휴가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나,

- 남성 출산휴가 5일 중 유급기간 3일에 대한 급여는 기업이 지급하고 있어, 이를 대폭 확대하는 경우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및 여성 출산휴가 급여는 일부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원(월 최고 135만원)하나, 남성 출산휴가의 경우 전액 기업의 부담

- 따라서, 제도의 정착상황을 보아가며 점진적으로 확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정부는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아빠의 달*을 도입('14.10월)하고 기간을 연장(1→3개월, '16년)한 바 있습니다.

*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시 두 번째 사용자에게 대해 첫 3달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150만원) 지급

- 또한, 금년 8월 발표한 저출산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아빠의 달 급여 상한액을 둘째 자녀부터 인상하였습니다.

* 월150만원 → 200만원, '17.7월 출생아부터 적용

김성식 의원(국민의당)

(미래사회전략팀장 송진혁 044-215-4930)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을 의무화하고, 관련 추가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의원님께서 언급하신대로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체인력 채용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나,
 - 의무화할 경우 기업에 비용부담뿐만 아니라 인력 운용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정부는 대체인력 채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재정지원** 기간을 확대***하는 등 자발적 대체인력 채용 확대를 추진 중입니다.

* 고용복지센터를 중심으로 대체인력 구인·구직정보 통합관리 및 종합 지원
: 채용지원 목표: ('15)1,274명 → ('16목표) 5,000명 → ('17목표) 1만명

** 대체인력 채용지원금: (대기업) 30만원 (중소기업) 60만원

***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기간(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17.1월 예정):
(현행)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최대 1년) → (개선) 인수인계기간(2주) 포함

김성식 의원(국민의당)

(고용환경예산과장 이상원 044-215-7230)

모성보호급여의 국가책임 확대를 위하여 모성보호
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의 일반회계 전출금 확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 최근 출산전후휴가급여 예산규모*가 정체 상태이지만 일반회계
전출금은 지속적으로 확대해왔습니다. ('12년 대비 4.7배 증가)

* 출산전후휴가급여(억원): ('12)2,419→('13)2,351→('14)2,368→('15)2,590→('16)2,470
일반회계 전출(억원): ('12)150→('13)250→('14)350→('15)700→('16)700

- ☐ 다만, 모성보호급여의 지출 증가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인상 등 다양한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습니다.

김성식 의원(국민의당)

(미래사회전략팀장 송진혁 044-215-4930)

3차 기본계획 및 저출산 보완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기재부 차원의 추진상황과 추가적으로 필요한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기획재정부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16~'20, '15.12월) 및 저출산 보완대책('16.8월)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재정·세제 측면에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 재정측면('17년 예산안)에서는 “결혼 → 임신·출산 → 보육 → 일·가정 양립” 등 생애주기별 지원을 위해 저출산 대책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사업으로 신혼부부·청년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맞춤형 행복주택을 1만호 확대(3.8→4.8만호, 1.3→2.5조원) 하였으며,

- 난임시술 지원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저소득층 지원 금액·횟수를 상향하는 등 난임지원을 확대(420→640억원) 하였습니다.

○ 세제측면('16년 세법개정안)에서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입양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확대하였습니다.

* (현행) 자녀 출산·입양시 출생순위 무관 자녀 1인당 30만원 세액공제 → (개선)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70만원 세액공제

□ 추가적으로 필요한 대책은 저출산 보완대책의 추진상황을 보아가며 지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서면답변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인재근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복지예산과장 최한경 044-215-7510)

가정양육수당이 어린이집 보육료에 비해 낮게 책정되면서 가정양육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기재부의 입장은?

- 현재 가정양육수당 지원수준은 프랑스(92~185유로/월) 등 해외 사례와 비교해 낮지 않습니다.
- 또한, '09년 제도도입 이후 지원단가 인상, 지원대상 확대* 등 지원을 꾸준히 확대해오고 있습니다.

* ('09) 0~1세 10만원 → ('11년) 0세 20, 1세 15, 2세 10만원
→ ('13) 지원대상 5세까지 확대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복지예산과장 최한경 044-215-7510)

가정양육수당 인상안이 반영되지 않은 이유와 향후 반영 여부에 대한 기재부의 입장은?

- ☐ 저출산 극복 등 가정양육수당 인상의 정책효과, 현 지원수준의 적절성, 정부 재정배분의 효율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17년 예산안에 적정수준을 반영하였습니다.
- ☐ 향후 반영여부는 보육료·아동수당 등 보육지원체계 전반에 대한 재편과 더불어 신중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복지예산과장 최한경 044-215-7510)

노인복지법에 국가·지자체가 경로당 냉난방비·양곡 구입비의 전부·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에도 시행령을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이유는?

- 동 사업은 재원과 함께 지방이양된 사업으로 현행 보조금 법령상 지원이 불가합니다.
- 또한, 감사원도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등 지방이양사업에 대해 국고보조금 예산을 편성하지 말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08년 이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한시 지원을 조건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 서면답변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진선미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재정집행관리팀장 강준모 044-215-5330)

행복주택 예산 등 17년 저출산대책 예산에 대한 집행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17년도 신규로 추진하는 매입 행복주택 사업은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집행계획을 토대로 실적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별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소관부처에서 적극 대응토록 하고,
-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집행 애로사항과 관련하여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중심이 되어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 서면답변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나경원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나경원 의원(새누리당)

(소득세제과 이용주 과장 044-215-4210)
(부가가치세제과 류양훈 과장 044-215-4320)

아이 1명과 관련된 세제지원을 전체적으로 종합·정리

☐ 기본공제

- 자녀 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

☐ 자녀세액공제

- 자녀 1인당 15만원(셋째부터 1인당 30만원) 세액공제
-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둘째부터 1인당 15만원 추가 세액공제
- 출산·입양시 자녀 1인당 30만원 추가 세액공제*

* ('16년 세법개정안) 둘째 이상 출산·입양시 세액공제 확대(둘째 30→50만원, 셋째 30→70만원)

☐ 자녀장려금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가구에 대해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 지급

☐ 그 외

- 자녀의 교육비·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세액공제율: 15%)

* 교육비 공제한도: (영유아~고교생) 300만원, (대 학생) 900만원
의료비 공제한도: 700만원

- 유아용 기저귀·분유, 산후조리원 이용비 부가가치세 면제

*** 서면답변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금태섭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 금태섭 의원 >

보험정책과

1. “고용보험 산전후 휴가급여 건강보험재정 이관은 신중히 검토하고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며 외국의 사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고용보험 산전후 휴가급여의 목적, 취지를 고려하면 현재 질병·부상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외국의 사례는 국가마다 상이하나 고용주, 고용보험, 실업보험 등 다양한 재원과 조세를 통해 임금근로자 및 자영업자에게 산전후 휴가 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벨기에, 프랑스와 같이 건강보험 관리기관에서 집행하고 있는 경우도 산전후휴가급여에 필요한 보험료를 별도 부과·징수하고 있어 우리나라와는 상이한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구 분		국 가
대상자	임금근로자(일부 자영업자)	벨기에, 프랑스, 일본, 네덜란드, 노르웨이, 캐나다, 핀란드, 독일, 한국
	모든 여성	오스트리아, 스웨덴, 영국, 덴마크
재원	별도재원(고용주, 부모보험, 실업보험 등) + 조세 등	오스트리아, 스웨덴, 영국, 덴마크 (이상 모든 여성, 조세중심) 네덜란드, 노르웨이, 캐나다, 핀란드, 독일, 한국
	건강보험 (별도 부과·집행)	벨기에, 프랑스, 일본

※ 벨기에, 프랑스의 경우, 산전후휴가급여에 필요한 보험료를 별도 부과·징수하여 건강보험 관리기관에서 집행, 일본은 사업장별 별도 부과하여 지급

※ 출처 : 노동연구원('13.4월 기준) 자료 재구성

*** 서면답변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김성식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 김성식 의원 >

인구정책총괄과

1. 아동수당 도입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의견과 재원확보 방안 마련을 위해 기재부와 협의한 사항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아동수당 도입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므로 국민부담 증가 등에 따른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 아동수당 도입시 무상보육체계를 중심으로 한 기존 아동양육지원 체계(무상보육, 가정양육수당) 전반에 대한 개편, 조율 등 종합적이고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아울러, 제도 도입시 아동빈곤 완화효과는 뚜렷하게 나타나나 출산율 제고효과에 대해서는 시각 차*가 존재하므로, 정책 우선 순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 아동수당 등 현금성 지원의 출산율 증가효과 미흡(weak positive), 실업 완화 등 경제적 불확실성 제거 정책이 더 효과적(Kohler, Billari and Ortega, '06)
- 한편, 아동수당은 기존 양육지원체계 개편, 재원 확보 등 제도 도입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에 재정당국과 협의해야 할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 김성식 의원 >

인구정책총괄과

2. 양육지원체계를 수요자 중심의 현금지원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의 효과에 대한 복지부의 의견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그간 우리나라 아동양육지원체계는 무상보육 등 서비스 중심 지원체계로 발전해 왔으며,
 - 현금지원은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에 대한 가정양육수당 등 서비스 지원의 보완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 양육지원을 현금지원체계로 전환할 경우, 제도가 단순화되고, 현금지원에 따른 일시적 체감도는 다소 상승할 수도 있으나,
 - 아동수당과 같은 현금성 지원을 통한 출산율 제고 효과에 대해서는 시각 차가 존재하므로, 저출산 대책의 우선 순위, 효과성 등과 관련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현행 양육지원체계 전반의 개편이 필요한 사안으로, 개편 과정에서 다양한 갈등과 쟁점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식 의원 >

인구정책총괄과

3. 아동수당을 부모의 양육에 대한 보조 개념(부모에 지급)이 아닌 아동 자체에 대한 공적 보장(아동에 지급)으로 인식을 전환하는 것에 대한 복지부의 의견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아동수당은 역사적으로 아동빈곤을 예방하는 데 초점을 둔 아동 복지정책으로서 도입되기 시작하였으며,
 - 이론적으로는 아동의 생존권과 권리를 보장하면서 아동의 발달을 도모하고, 아동이 있는 가구의 빈곤을 예방하자는 취지를 가진 보편적 성격의 복지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 아동수당 도입과 관련해서는 아동양육지원 전반에 대한 재설계, 소요 자원 확보 문제뿐만 아니라,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아동수당의 성격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성식 의원 >

인구정책총괄과

4. 출산전후 휴가기간을 현행 90일에서 ILO 권고기준인 120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복지부의 의견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출산전후휴가기간 확대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여성의 경력단절 및 주출산 연령대 여성근로자 고용기피 유발 우려, 기업 부담, 소요 재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또한, 경제계, 노동계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ILO의 권고 기준을 포함한 적정 수준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 김성식 의원 >

인구정책총괄과

5. 남성의 육아참여 제고를 위해 남성 출산휴가도 유급 30일(6개월간 매월 5일 이상)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복지부의 의견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정부는 남성의 육아·가사 참여 확대를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보다는 남성육아휴직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전체 육아휴직자의 5%에 불과한 남성 비중을 2020년까지 15%로 확대한다는 목표로 아빠의 달 등 남성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 일본·독일은 법정 배우자 출산휴가 없이 남성은 육아휴직을 활용

○ 또한, 주요 선진국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고려할 때, 30일간의 유급 배우자 휴가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스웨덴·벨기에는 10일, 덴마크·영국·프랑스는 2주

< 김성식 의원 >

인구정책총괄과

6.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을 의무화하고, 대체인력을 사용하는 민간기업의 추가비용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복지부의 의견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저출산 해소 및 일·가정 양립 확산을 위해 대체인력 채용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원님의 취지에는 공감하며,

- 정부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여건 조성을 위해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 및 채용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대체인력 지원금: 육아기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월 6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20만원) 지급

참고 : 대체인력 지원서비스 강화 방안('16.8.25. 저출산 보완대책)

- ▶ 대체인력채용 활성화를 위해 대체인력 지원기간에 인수인계기간(2주) 포함 등 대체인력채용지원금 제도 개선('17년 시행)
- ▶ 고용(복지+)센터·새일센터·위탁기관·중기청·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 대체인력 채용협의체를 활성화, 즉시 구인 종합지원체계 강화
- 제도홍보·우수사례 전파, 여성다수고용기업 중 대체인력 미채용 사업장* 집중 발굴·알선, 주기적 대체인력 수요조사·채용지원체계 구축
 - * 예: 100인이상 병원 총 926개소 중 5명이상 대체인력 활용기관은 43개소(4.6%)에 불과
- 새일센터에 대체인력지원서비스 전담인력 신규 배치
 - * '16.下 30여곳 내외 → 성과에 따라 추후 확대

○ 앞으로도 육아휴직 사용 여건 보장을 위해 대체인력 지원금 확대 등 관련 대책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김성식 의원 >

인구정책총괄과

7. 모성보호급여의 국가책임을 확대해 재정안정성을 확보하도록 일반회계에서 모성보호급여의 재원을 50% 이상 분담하는 방안에 대한 복지부의 의견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이용의 보편화를 위한 적극적 제도개선이 가능하도록 일반회계 전입금 확대 등 모성보호재원의 안정적 지출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다만, 일반회계 분담비율(50%)에 대해서는 입법과정에서 추가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성식 의원 >

인구정책총괄과

8. 3차 기본계획 및 저출산 보완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복지부 차원의 추진상황과 추가 필요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3차 기본계획 및 보완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평가체계를 강화하고 차질 없이 시행 중입니다.
 -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복지부내 인구정책 분석·평가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추진 기반을 확충하였습니다.
- 또한, 저출산 대책이 지역사회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의 저출산 대응 공조체계 구축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지역의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전국 저출산 극복사회연대회의*를 출범시켜, 지역의 저출산 극복 운동 붐을 조성하고 있으며,
 - * 17개 시도별로 경제계, 종교계, 시민단체, 학계 등 300여개 단체가 참여하여 가족문화 개선, 부문별 저출산 극복 운동 확산('16.6. 출범)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시·도별 릴레이 현장소통, 지방 저출산 대책 평가 및 인센티브*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 * 행정자치부와 협력하여 지자체 저출산 대응평가 신설, 우수지자체 특별교부세 지원(50억원 규모) 등 추진, 저출산 대책 관련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개최(10.28)
- 앞으로도 인구위기 대응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일관성 있게 대책을 추진하면서,
 - 청년일자리 창출,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초등돌봄 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 남성·중소기업·비정규직 일·가정양립 지원 등 핵심대책에 대한 점검·보완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김성식 의원 >

인구정책총괄과

9. 저출산 극복을 위해 해외에서 시행 중인 제도 중 우리나라가 시행하지 않고 있는 제도의 현황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지난 10년간 저출산 대책을 수립·시행하면서, 임신·출산, 돌봄, 일·가정 양립 등과 관련된 다양한 해외 사례를 참고한 바 있습니다.
- 아동수당, 부모보험 등 해외에서 시행 중이나 도입되지 않은 일부 제도가 있으나,
 - 우리나라 관련 제도와와의 정합성, 소요 자원, 사회문화적 맥락 등을 고려한 종합적 검토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 (아동수당) 일본은 아동수당을 도입했으나, 우리와 달리 무상보육 미실시 (부모보험) 스웨덴, 캐나다 퀘벡 등에서 예외적으로 육아휴직 등 지원하는 부모 보험 운영, 우리와 달리 조세방식으로 사회보험제도 운영
- 한편, 육아휴직, 탄력근무제 등 다양한 일·가정 양립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용되기 어려운 사례에서 잘 드러나듯이,
 - * 유연·탄력근로이용률 : 출산선진국 42.4% vs 한국 7.6%(고용부 일·가정양립실태조사)
- 기존에 도입된 여러 제도가 우리 현실에 맞게 정착되고, 수요자에게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향후 저출산 대책 추진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해외 사례를 적극 연구·검토하여, 한국적 현실에서 실행 가능한 대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서면답변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인재근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 인재근 의원 >

복지정책과

1. 고용중심적 청년정책의 한계 및 청년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복지부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 미래 희망인 청년들에게는 좋은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 취업훈련, 직업능력 개발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고용애로를 겪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청년 취업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청년 기본소득 도입은 아직 논의 중인 개념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특히, 청년에게만 기본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은 세대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꼭 필요한 계층에 대한 복지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또한, 근로여부 등과 상관없이 지급하는 방식은 청년들의 근로 의욕을 저하시킬 우려도 있습니다.
-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 맞춤형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인재근 의원 >

기초생활보장과

2. “빈곤아동들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에서 제외되는 가장 큰 이유인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필요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은 성실한 부양의무자와의 형평성, 가족 부양·상속에 대한 한국적 가정상황, 사회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사항으로서
 - 국가와 사회의 부양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지난 해 맞춤형 급여 개편을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등 지속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왔습니다.
 - * 4인가구, '15.6월 297만원 → '16년 504만원
- 또한 조손 가정 등에 대한 별도가구 보장, 양육에 필요한 비용은 소득산정에서 제외하는 등 빈곤아동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탄력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에 대해서는 연구용역,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중장기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서면답변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진선미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 진선미 의원 >

인구정책총괄과

1. 저출산 대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제대로 된 계획 없이 집행되는 사업이 많으므로 2017년도 예산안 중 저출산 대책 사업에 대해 상세 집행 계획을 점검하여 보고해달라고 하셨습니다.

- 정부는 매년 저출산 대책의 상세 실행계획을 포함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절차 : (전년도 12월) 시행계획 수립지침 통보
→ (당해년도 1월) 각부처 시행계획 제출 → (당해년도 2월) 시행계획안 검토·보완 → 시행계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심의 및 확정

- 2017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저출산 대책의 상세 예산 집행계획의 적절성, 실행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집행실적 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